【중소기업금융채권 등록필증(통장)】약관

제1조(약관의 적용)

- ① 이 약관은 중소기업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중소기업금융채권(이하 "중금채"라 합니다)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(이하 "고객"이라 합니다) 간의 채권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, 고객은 중소기업금융채권 등록필증(이하 "등록필증"이라 합니다)을 발급 받습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거치식예금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2조(등록필증 발급)

- ① 은행에 중금채를 등록할 경우 고객은 실명번호(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, 주소, 성명 및 거래에 사용할 인감, 서명 등 필요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② 중금채는 은행 앞 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며,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채권현물은 교부하지 않습니다.

제3조 (발행조건)

- ① 최저가입금액은 할인채인 경우 5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, 이표채·복리채는 10만원 이상 1원 단위로 합니다.(액면가액 기준)
- ② 계약기간은 할인채는 1년, 이표채·복리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월단위 및 10년으로 합니다.

제4조(지급장소)

등록필증의 중금채 원리금은 은행의 본·지점에서 지급합니다.

제5조(지급시기)

- ① 등록필증의 중금채 원리금은 각 회차별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합니다.
- ② 고객이 등록필증으로 제 1항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을 적거나 입력하고 거래인감으로 날인 또는 서명한 소정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제6조(이자)

- ① 등록필증의 중금채 이자(만기후이자 포함)는 은행에서 정한 이율과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. 다만, 만기일이 토요휴무일 또는 공휴일로 만기일 전영업일에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경우 약정이율로 지급할 수 있으며, 토요 휴무일 또는 공휴일 일수는 차감하고 계산합니다.
- ② 은행은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비치·게시하고,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.

제7조(중도해지)

중도해지가능 중금채의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며, 이때 이자는 매출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
제8조(사고·변경사항의 신고)

- ① 등록필증이나 인감을 분실·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, 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② 고객은 성명, 주소, 인감 및 서명,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간 안에 전산입력등을 마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,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제9조(등록필증의 재발급 등)

등록필증 또는 인감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등록필증을 재발급하거나 원리금 을 지급합니다.

제10조(면책)

은행은 등록필증이나 청구서, 제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된 인감(또는 서명감)과 육안으로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 기고, 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비밀번호입력기(PIN-Pad기)를 이용하여 입 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기타의 처리 를 한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이나 비밀번호의 누설 기타어떠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은행이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11조(소멸시효)

등록필증의 중금채 원금은 만기일로부터 5년, 동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(휴면예금)으로 봅니다.

제12조(양도·질궈설정)

등록필증의 중금채는 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할수 있습니다.

제13조(약관적용의 순서)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예금거래기본약관, 거치식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이 약관을 먼저 적용합니다.

부 칙(2012. 4. 25.)

이 약관은 2012. 4. 25일 이후 신규 발행분부터 적용됩니다.

부 칙(2016. 4. 1)

이 약관은 2016. 4. 1일 이후 신규 발행분부터 적용됩니다.

부 칙(2017. 10. 20)

이 약관은 2017. 10. 20일 이후 신규 발행분부터 적용됩니다.

부 칙(2018. 1. 8.)

이 약관은 2018. 1. 8일 이후 신규 발행분부터 적용됩니다.

부 칙(2021. 5. 7.)

이 약관은 2021. 5. 7일부터 적용됩니다.

※ 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